

춘천지방법원 2022. 5. 19 선고 2021나33705 판결 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]

재판경과

춘천지방법원 2022. 5. 19 선고 2021나33705 판결

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. 6. 1 선고 2019가단2154 판결

전문

원고, 항소인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성길

피고, 피항소인 1. C

2. D

변론종결 2022. 4. 14.

판결선고 2022. 5. 19.

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. 6. 1. 선고 2019가단2154 판결

주문

1.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
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주시 E 전 654㎡ 중 각 1/2 지분에 관하여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2. 결 론

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,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여현주, 판사 신흥호, 판사 장두봉